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희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4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1일

발 의 자: 이희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성연, 박영한,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소라, 이종태,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공사내역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설물 공사 이후 체계적인 관리방법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하자검사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하자보수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기간 경과 후 예산을 새로 들여 공사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음.

-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명확한 하자검사의 행정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 바.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 사. 시의회 보고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7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6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 본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 검사 등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축한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한 시설공사의 시행과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시행 및 하자관리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

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 시스템 “이라 한다)”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의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